

#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

민원인

'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'  
제출

▶ 첨부서류

- ① 배치도(데크, 주차장, 이동로 표기)
- ② 평면도(가로x세로x높이 표기)
- ③ 대지사용승낙서(임차농지의 경우)
- ④ 농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
- ⑤ 농촌체류형 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건축경관과

신청서 접수 및  
서류검토

▶ 검토

「건축법」상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

▶ 협조

타 법령 제한규정 협의  
(15일 이내)

• 농업정책과: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상 입지제한지역 여부,  
설치대상 농지, 면적, 가능대상, 도로연접 여부

기준충족 시

건축경관과

신고필증 교부

▶ 신청서 접수일로  
부터 3일 이내

※ 타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 의견 조희  
(「건축법」 제20조 제7항)

← 민원인 상·하수도(정화조) 및 전기 설치

민원인

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

▶ 준비서류

① 층고 및 소방시설 설치 사진

민원인

농지소재지 읍면동  
농지대장 등재

▶ 첨부서류

- 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
- ②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
- ③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

▶ 민원인

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부착

문의처

- ▶ 건축: 군산시 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
- ▶ 농지: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



# 농촌체류형 쉼터 & 농막 설치 가이드



군 산 시  
농업정책과

구분	농막	농촌체류형 쉼터
설치 형태	「건축법」에 따른 '임시창고' 건축 연면적 20m <sup>2</sup> 이내 (부속시설 면적 제외) 가설건축물 ※ 주거목적 사용불가	「건축법」에 따른 '임시숙소' 한 세대당 건축 연면적 33m <sup>2</sup> 이내 (부속시설 면적 제외) 가설건축물
설치 주체	본인이 농작업으로 직접 활용하는 농업인 또는 주말·체험 영농인 ※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진흥 구역에 설치시, 농업인만 가능	
설치 대상 농지	① 「농지법」상 모든 농지 ② 농촌체류형 쉼터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- 소방차·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(※임도 제외) 등에 접한 농지 - 설치농지 최소 면적은 건축 연면적 및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3배 보유 *설치제한지역: 방재지구,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, 붕괴위험지역, 개별법률에서 제한지역등	
공통 사항	(기초)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(기초석·주춧돌 등 독립기초 형식 등) 타설 가능 (처마)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미만 허용 (데크)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.5m 면적까지 설치 가능 (층수) 1층(높이 4m 이내)으로 제한 (주차장) 1면(노지형, 13.5m <sup>2</sup> 이내) 설치 가능, 형질 변경 불가(콘크리트 포장 불가) (전입신고) 불가능 (「농지법」위반), 상시거주 불가능(주택이 아님) (설치사항) 전기, 수도 등의 지선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후 설치 (의무사항) ① 주택용소방시설(소화기, 단독경보형, 감지기) 설치 ② 영농의무 ③ 설치 60일 이내 농지대장 등재 ④ 표지판 부착	

※ 농촌체류형 쉼터·농막과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에 반드시 이용하여야 함  
(조경용 수목 및 잔디 식재, 콘크리트 타설 등의 형질변경 전부 불가)

## 농막 \* 쉼터 화재예방 안내

- ☞ (농촌체류형 쉼터)는 사람이 거주 할 수 있는 임시숙소로 활용 되는 시설입니다.
- ☞ 화재에 대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한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준용하고 있습니다.
- ☞ (농막) 화재안전을 위해 소화기 등 소방시설 비치

### ☑ 의무 사항

주택용 소방시설(소화기, 단독경보형 감지기)설치

## 주택용 소방시설이란?

### 주택 화재 경보기(단독 경보형 감지기)

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(건전지)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

### 소화기

소화약재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(消火)에 사용하는 기구

### 구입방법

인터넷, 대형마트,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



★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